

최신 판례 예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626, 2022.02.25

■ 질 의

- 2021.11.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취득한 주택(중전주택)을 별도 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하여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에 대해 비과세된 후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 중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후 양도하는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721, 2014.09.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납세과-721, 2014.09.23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영 154조제1항제1호의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 규정을 적

용할 때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한 기간의 총족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자영예술가의 창작품 판매에 따라 발생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함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1877, 2022.03.30

■ 질 의

- 질의인은 생존한 작가로 서양화 작품을 1점당 6천만원 미만으로 화랑에 판매*하였고
* 사업자등록 및 별도의 판매시설등 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함
- 화랑은 작품대금을 질의인에게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함

질의

-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서화)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 사실관계의 경우, 자영예술가인 화가가 자신의 창작품인 미술품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7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8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대하여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사전법규법인-232, 2022.03.30

질 의

-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임
- A법인은 2018사업연도 귀속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였고,
 - 2019사업연도 귀속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는 같은 항 제호에 따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였으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5항제호에 따라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투자포함방법을 적용하였음
- A법인은 수정신고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질의

- 2019사업연도 귀속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2020사업연도까지 적용한 내국법인임
 - 2019~2020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동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호의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란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법규소득-7614, 2022.02.25

질 의

- 소득령 27에 따른 의제배당의 계산 시,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요건 중 하나로서 일정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 이 때 소액주주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규칙 §14의2(2)는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질의

- 소득규칙 14의2(2)에 규정된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의미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호의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란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